

2002. 12. 20
(13 : 30)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1. 예산안 편성방향

-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의 정리
- 여건변동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법정·의무적경비 계상
- 계속사업비와 명시이월 사업비 계상

2. 예산안 편성기준

가. 세입예산

-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 징수전망액 증액
- 재산매각수입, 잠사박물관 건립 부담금등 세외수입 증액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부처의 추가 내시에 의해 조정

나. 세출예산

- 중앙예산지원에 따른 비도지정사업비 추가 및 도비부담경비 계상
- 도 자체사업 및 시·군 현안과 주민숙원사업비 추가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 조정

3.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예산총칙

(단위:천원)

구 분	제3회추경	기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조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		
○ 일반회계	44,742,000	44,467,000
○ 기타특별회계	3,206,000	3,199,000
- 충북과학대학운영	239,000	239,000
- 의료보호기금운영	2,533,000	2,526,000
-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	356,000	356,000
-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78,000	78,000
제5조 예비비		
○ 일반회계	14,568,002	15,880,717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	289,969,515	180,061,447
제2조 업무예정량		
가. 지방채발행계획액	54,000,000	42,000,000
나. 지방채상환원리금총액	61,879,966	61,879,966
다. 기금융자계획총액	15,005,000	80,000,000
라. 융자금회수총액	32,036,446	32,036,446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		
○ 사업수입	18,122,217	14,113,547
○ 사업비용	15,579,926	15,935,778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		
○ 자본적 수입	77,947,900	65,947,900
○ 자본적 지출	274,013,765	164,125,669
제6조 예산전용금지 과목		
○ 부채상환금	61,977,610	61,957,638

나. 세입세출예산안

1) 예산안 규모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다음 표와 같음

(단위:천원, %)

구 분	제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 율
합 계	1,915,810,880	1,795,104,844	120,706,036	6.7
○ 일반회계	1,491,399,017	1,482,208,907	9,190,110	0.6
○ 특별회계	424,411,863	312,895,937	111,515,926	35.6
- 공기업특별회계	317,582,338	206,292,609	111,289,729	53.9
- 기타특별회계	106,829,525	106,603,328	226,197	0.2

2) 일반회계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0.6%인 91억 9,011만원이 증가한 1조 4,913억 9,90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음(표1 참조)

- 지방세는 7.6%인 200억원이 증가한 2,842억 9,100만원으로 취득세 14.0%, 등록세 10.5%가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10.1%인 95억 3,329만 3천원이 증가한 1,039억 7,460만 6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 53.0%, 잡수입 53.3%가 증가한 반면 사용료수입은 0.7% 감소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0.1%인 2억 1,300만원이 증가한 2,614억 6,790만 8천원이고
- 보조금은 2.8%인 205억 5,618만 3천원이 감액된 7,077억 5,704만 2천원임.

〈표1〉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천원, %)

구 분	제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 지방세	284,291,000	264,291,000	20,000,000	7.6
- 보통세	188,978,000	168,978,000	20,000,000	11.8
- 목적세	90,061,000	90,061,000	-	0
- 과년도수입	5,252,000	5,252,000	-	0
○ 세외수입	103,974,606	94,441,313	9,533,293	10.1
- 경상적세외수입	15,721,499	15,732,869	△11,370	△0.1
- 임시적세외수입	88,253,107	78,708,444	9,544,663	12.1
○ 지방교부세	261,467,908	261,254,908	213,000	0.1
○ 지방양여금	98,908,461	98,908,461	-	0
○ 보조금(국고등)	707,757,042	728,313,225	△20,556,183	△2.8
○ 지방채	35,000,000	35,000,000	-	0
총 계	1,491,399,017	1,482,208,907	9,190,110	0.6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도 자체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과 국고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국가 지원 사업비 조정으로

당초예산 대비 0.6% 증가한 1조 4,913만 9,901만 7천원의 규모로 편성 됨.

- 기능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은

- 일반행정비는 1.5%인 27억 7,681만 2천원이 감액된 1,826억 3,091만 4천원
- 사회개발비는 1.1%인 45억 5,142만 2천원이 감액된 4,011억 2,799만 9천원
- 경제개발비는 1.3%인 96억 409만 2천원이 증가한 7,487억 2,954만 7천원
- 민방위비는 0.1%인 5,167만 4천원이 감액된 488억 3,707만 4천원
- 지원 및 기타경비는 6.8%인 69억 6,592만 6천원이 증가한 1,100억 7,348만 3천원임.

○ 주요 증감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 43.7%, 교통관리비 10.1%, 교부금 10.4%가 각각 증가하였고

입법및선거관계 15.9%, 일반행정비 0.8%,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9%, 지방채상환 8.3%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기능별 예산내역은 <표2> 와 같음.

<표2>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장 관 별	제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율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1,491,399,017	100	1,482,208,907	100	9,190,110	0.6
1000 일반행정비	182,630,914	12.2	185,407,726	12.5	△2,776,812	△1.5
1100입법및선거관계	7,410,105	0.5	8,812,919	0.6	△1,402,814	△15.9
1200일반행정비	175,220,809	11.7	176,594,807	11.9	△1,373,998	△0.8
2000 사회개발비	401,127,999	26.9	405,679,421	27.3	△4,551,422	△1.1
2100교육및문화비	50,666,922	3.4	48,939,751	3.3	1,727,171	3.5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89,009,300	6.0	89,402,516	6.0	△393,216	△0.4
2300사회보장비	180,554,531	12.1	181,322,485	12.2	△767,954	△0.4
2400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80,897,246	5.4	86,014,669	5.8	△5,117,423	△5.9
3000 경제개발비	748,729,547	50.2	739,125,455	49.9	9,604,092	1.3
3100농수산개발비	151,002,682	10.1	150,708,493	10.2	294,189	0.2
3200지역경제개발비	60,319,975	4.1	41,980,975	2.8	18,339,000	43.7
3300국토자원보존 개발비	530,924,441	35.6	540,545,538	36.5	△9,621,097	△1.8
3400교통관리비	6,482,449	0.4	5,890,449	0.4	592,000	10.1
4000 민방위비	48,837,074	3.3	48,888,748	3.3	△51,674	△0.1
4100민방위관리비	864,139	0.1	864,139	0.1	-	0.0
4200소방관리비	47,972,935	3.2	48,024,609	3.2	△51,674	△0.1
5000 지원및기타경비	110,073,483	7.4	103,107,557	7.0	6,965,926	6.8
5100지방채상환	8,053,227	0.6	7,998,248	0.6	54,979	0.7
5200제지출금	398,968	0.0	388,755	0.0	10,213	2.6
5300교부금	87,053,286	5.8	78,839,837	5.3	8,213,449	10.4
5400예비비	14,568,002	1.0	15,880,717	1.1	△1,312,715	△8.3

〈표3〉 일반회계 품목별·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장 관 별	제3회추경	%	기정예산	%	증 감 율	
					금 액	%
합 계	1,491,399,017	100.0	1,482,208,907	100.0	9,190,110	0.6
100 인 건 비	68,260,001	4.6	68,097,160	4.6	162,841	0.2
200 물 건 비	60,696,825	4.1	60,861,019	4.1	△164,194	△0.3
300 이전경비	350,390,390	23.5	336,019,106	22.7	14,371,293	4.3
400 자본지출	860,398,396	57.7	872,699,355	58.9	△12,300,959	△1.4
500 융자 및 출자	3,522,000	0.2	3,522,000	0.2	-	-
600 보전재원	2,901,620	0.2	2,901,620	0.2	-	-
700 내부거래	130,262,806	8.7	121,839,175	8.2	8,423,631	6.9
800 예비비및기타	14,966,970	1.0	16,269,472	1.1	△1,302,502	△8.0

3)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액기준으로 당초예산보다 35.6%인 1,115억 1,592만 6천원 증가한 4,244억 1,186만 3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공영개발사업,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각각 증액 계상 되었음.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002년도 공채 매출수입, 2001년도 이월액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61.0%인 1,099억 806만 8천원 증가한 2,899억 6,951만 5천원으로 편성함.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중평토지구획정리사업비환수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경 23지구미분양용지매출수익, 기타 임대사업수익 및 이자수입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5.3%인 13억 8,166만 1천원 증가한 276억 1,282만 3천원으로 편성함.

-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시군결산 반환금 수입을 증액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0.3%인 2억 2,619만 7천원이 증가한 844억 192만 5천원으로
편성함.

〈표4〉 2002년도 제3회 충청북도특별회계 예산안

(단위:천원, %)

회 계 별	제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 율
합 계	424,411,863	312,895,937	111,515,926	35.6
○ 공기업특별회계	317,582,338	206,292,609	111,289,729	53.9
- 공영개발	27,612,823	26,231,162	1,381,661	5.3
- 지역개발기금	289,969,515	180,061,447	109,908,068	61.0
○ 기타특별회계	106,829,525	106,603,328	226,197	0.2
- 충북과학대학운영	7,965,962	7,965,962	-	-
- 의료보호기금	84,401,925	84,175,728	226,197	0.3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11,888,000	11,888,000	-	-
-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2,573,638	2,573,638	-	-

4. 검토의견

-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7,951억 484만 4천원보다 6.7%인 1,207억 603만 6천원이
증가한 1조 9,158억 1,088만원의 규모로
 - 일반회계 1조 4,913억 9,901만 7천원
 - 특별회계 4,244억 1,186만 3천원이며세입, 세출 예산안중 중요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가. 세입예산

1) 지방세 징수분석 및 증액계상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징수목표의 과대계상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나 지방재정의 안정적인운영에 집착한 나머지
지방세 징수목표를 지나치게 과소계상 우선투자하여야 할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것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인바

년말 추경에 지방세 징수목표를 200억원(취득세 98억원, 등록세
102억원)증액 계상한 요인은 무엇인지, 제1회추경(7. 22) 또는
제2회 추경(10. 23)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2)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분수국유림(737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1,045백만원), 중소
기업자금운용수익(8억원) 증액사유
- 중기사용료(11백만원), 국제IT교육생시설사용료(197백만원)
순환수렵장 적립금해지수입(40백만원) 감액사유

나. 세출예산

1) 예산중복 요구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4,800만원을 반영하고, 2002년 3회추경예산에 7,400만원을 재차 요구한 것은 중복요구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행사성 예산

행사성예산에 대하여는 도민, 언론단체 등에서 투자의 효율성에 대하여 그간 많은 비판을 해왔고 예산심의나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누차 지적해 왔음에도 꼭 필요한 행사예산으로서 설명 승인을 받고도 전액 집행하지 않고(오페라직지공연 3,000만원, 대한민국향토가요제 3,000만원) 금회 추경예산에 삭감요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3) 예산요구와 부정적 언론 보도

기금 또는 단체지원 예산은 금번추경에 증액 반영요구하고 그 결과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금번 추경반영분 만큼 감액 계상 요구한 것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부정적 보도가 됨으로써 관련 단체구성원 및 도민들에게 오해나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문화예술진흥기금1억)

4) 자치단체 재정보전금

자치단체의 일반 재정보전금의 지원 취지는 재정이 열악한 기초 자치단체에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지원액의 60%는 인구비율에 따라서 40%는 도세 징수 실적비율에 의하여 지원할 경우 도세 과세 자원이 많고 인구가 많은 시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도세 징수교부금도 많이 받고, 일반재정보전금도 많이 받게 되어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전제도의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시군 재정지원의 「부익부」 및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5)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정의 국비지원예산액 15억원중 시군 직접교부금 6억원을 공제하더라도 9억원이 남는데 국비 10억 3천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6) 중평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당초에 상가에서 자부담키로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회 추경에 4억 4,700만원을 도비 지원 예산으로 증액요구한 것은 상인들의 재원 부담약속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의 투자는 안되며 무슨 일이든지 안되면 행정기관이 해 줄 것이라는 의태심만 조장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주차장 완공후의 운영계획(유료 또는 무료화)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7) 지역개발기금예산

- 예금이자 40억원의 증액사유, 2002년도 공채매출금선급이자 19백만원 계상사유와 융자금 649억 9,500만원의 감액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은 5년 인데 '86년 및 '91년 발행 공채 이자 시효소멸액을 금번에 계상한 것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8) 예산지원단가(66쪽)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로 1인당 지원액을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15만원을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는 16만 5천원을 계상한 바 설명이 요구됨.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6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을 1회추경 또는 2회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반영요구한 것과 그간의 대우수당은 어떻게 지출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함.

10) 아동관련 사업예산(60~6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증액요구하고,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아동급식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의 감액 요구한 것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11) 사회복지관련예산

경로연금, 노인요양시설운영, 장애인 지원관련예산 등 사회복지관련예산은 매년 과대 계상 하였다가 연말 추경에 감액 또는 년도말에 다액의 국고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음으로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여 주민의 복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2) 의료보호특별회계

예탁수수료, 시군진료비 증액과 공기관 대행 의료급여 진료비 감액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13)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안

- 충청권 벤체프라자 및 충북벤처마트개최(91쪽)
-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원 전출금의 운용계획(92쪽)
-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 재원 대체(97쪽)
- 분수국유림 입목 매각대 적립(109쪽)
- 학교용지 부담금 예비비 계상(134쪽)
- 문화재 수해복구공사 국비감액, 도비증액(126쪽)
- 2002년도 지방도정비 채무부담 상환(142쪽)
-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138쪽)
- 충주우회도로사업(143쪽)
- 증평토지구획정리 사업비 37억원감액(170쪽)

- 명시이월 사업 20건중
 -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시스템도입
 -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
 - 진천공예마을 조성
 - 수해상습지개선
 -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
 - 회남대교 보수보강
 - 소방 종합정보 통신망 구축
 - 고성능 화학차 안전장비 구입